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83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의자 : 송옥주 · 조계원 · 주철현  
홍기원 · 전용기 · 추미애  
이수진 · 서미화 · 윤준병  
이병진 · 한정애 · 전종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농수협 등 조합법인은 지역 농어업인의 자조적 협동체로서 조합원 실익사업 · 경제사업 · 유통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 · 예탁금의 소득세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농어촌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러한 특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재산형성 및 조합법인의 공익적 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 유지에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등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의 제도적인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

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  
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 다. 농업용 · 축산업용 ·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